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 부과취소

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 및 변경】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1. 납세자 : ***
2. 부과취소사유 : 세무서 수시분을 신고분으로 납부
3. 건수 및 세액

(단위 : 원)

취소건수	당 초	취 소	차 액
1건	47,320,990	47,320,990	0

- 붙임 1.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결의결정서 1부.
 2.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부과취소내역서 1부.
 3. 관련 자료 1부. 끝.

주무관 이기명 지방소득세4팀 최종권 세무2과장 김광수 기획경제국장 07/28 문경수

협조자